

나. 일반시험법 중 36. 살균소독력시험법에
포자현탁액시험법을 추가 함.
(IV.36)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등 종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60호, 2009. 7. 30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사전조사 및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고자 「식품 등 종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일부를 개정고시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아트라진, 부피리메이트, 클로로벤주론 및 클로로톨루론) 신설(제3조제11호)

다.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제4조)

나. 식품 중 니트로사민류 시험법 신설(제3조제12호)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공포

-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943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지원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사업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수·보수에 대한 용자 사업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운영비용 보조 등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영 제6조)

- (1) 같은 영업소에 대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검사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요청한 자가 원하는 방법이나 문서로 알려주도록 함.
- (2) 이와 같이 위생검사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사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긴급대응 요건 구체화(영 제7조 및 제8조)

- (1) 국내의 위해식품 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나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 등에서 검출된 경우 또는 소해면

상뇌증·탄저병·가금 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을 식품제조 등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이나 지상파라디오 방송 또는 기간통신망을 통하여 그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의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2) 이와같이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식품위해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진흥기금 사업 추가(영 제61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식생활 안전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이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보수에 대한 융자사업 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데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포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및 신고자 비밀보장(영 제63조 및 제64조)

- (1)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신고자의 비밀 보장을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2) 위반 사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금액을 1천만원 이하부터 3만원 이하까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그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누설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3) 이와 같이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고한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공포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 2009. 8. 12 -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생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고,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수입업소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식품위생법」(법률 제943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76호, 2009. 8. 6. 공포, 8.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고대상 이물의 기준과 보고 절차를 정하고 우수등급업소의 공표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규칙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 공포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가. 소비자 위생점검 절차 및 결과 표시

등(규칙 제35조 및 별표 13)

- (1)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이 소비자 등으로부터 위생관